

2024. 10. 16.(수) 실시

# 재·보궐 선거 선거사무 일정표

Ⅰ 주요사무일정 …… 2

Ⅱ 세부일정 ……… 4

2024. 10. 16.(수) 실시

## 재·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	관계법조
		인구수 등의 통보	인구의 기준일 후 15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	법§4, §60의2①, 규§2①②
		선거비용제한액 공고·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	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	규§51①②, 규§26의2③
'24. 6. 18.부터	화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시·도지사 및 교육감선거]	선거일 전 12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60의2①
7. 5.부터	금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구·시의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60의2①
7. 18.까지	목	각급선거위원회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	선거일 전 9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(이내))까지	법§60②
8. 4.부터	일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군의 장의 선거]	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60의2①
8. 17.부터 10. 16.까지	토 수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	선거일 전 6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86②
9. 16.까지	월	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	선거일 전 30일까지	법§53②
9. 24.부터 9. 28.까지	화 토	선거인명부 작성	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(이내)	법§37, 규§10
		거소투표신고 및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		법§38, 규§11
		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		법§65⑤
9. 26.부터 9. 27.까지	목 금	후보자등록 신청 (매일 오전 9시 ~ 오후 6시)	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	법§49, 규§20

시행일정	요일	실시사항	기준일	관계법조
10. 2.까지	수	선거벽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	법§64②, 규§29④
<b>10. 3.</b>	목	선거기간개시일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	법§33③
10. 4.까지	금	선거공보 제출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	법§65⑥, 규§30⑤
		선거벽보 첨부	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	법§64②, 규§29②⑤
10. 4.	금	선거인명부 확정	선거일전 12일에	법§44①
10. 6.까지	일	거소투표용지 발송 (선거공보, 안내문 동봉)	선거일전 10일까지	법§65⑥, §154①⑤, 규§77
		투표안내문(선거공보 동봉) 발송	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§65⑥, §153①, 규§76
10. 9.까지	수	사전투표참관인 선정·신고	선거일전 7일까지	법§162② 규§3③
<b>10. 11.부터 10. 12.까지</b>	금 토	사전투표(매일 오전 6시 ~ 오후 6시까지)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§155②, §158
10. 14.까지	월	투개표참관인 선정·신고	선거일전 2일까지	법§161② 법§181②③
<b>10. 16.</b>	수	투 표(오전 6시 ~ 오후 8시)	<b>선 거 일</b>	법 제10장
		개 표(투표종료후 즉시)		법 제11장
10. 28.까지	월	선거비용 보전청구	선거일후 10일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까지	법§122의2①, 민법§161 규§51의3①
12. 15.이내	일	선거비용 보전	선거일후 60일이내	법§122의2①, 규§51의3②

2024. 10. 16.(수) 실시

## 재·보궐선거 세부일정

「공직선거법」은 “법”으로,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은 “규”로, 「정치자금법」은 “정금법”으로, 「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」은 “정금규”로,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」은 “공병법”으로, 「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은 “공병령”으로, 「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은 “토론규”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은 “교자법”으로 각각 약칭함.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상시	<b>기부행위제한</b>	누구든지	상시	법§112~§117
	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서면신고(정당·방송·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 등은 제외) ※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	누구든지	상시	법§108③
	인구수 등의 통보 (구·시·군위원회에)	구·시·군의 장	인구의 기준일 후 15일 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)까지	법§4, §60조의2① 규§2①②
'24. 4. 19.(금)부터 10. 16.(수)까지	정당·후보자(예정자 포함)가 설립·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	정당·후보자(예정자 포함)가 설치·운영하는 기관·단체 등	선거일 전 18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)부터 선거일까지	법§89②
5. 6.(월)부터	전과기록(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) 조회 (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)	후보자가 되려는 사람, 정당	선거기간개시일전 150일부터	법§49⑩ 규§20⑦
	<b>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통지</b> (정당, 정당선거사무소, 예비후보자, 후보자에게)	선거구위원회	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10일)까지	법§60의3 §122 규§26의2③, §51①② 교자법§49①
6. 18.(화)부터 10. 16.(수)까지	시·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구성· 운영	시·도위원회	선거일전 12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후 5일)부터 선거일까지	법§10의3② 규§2의4①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6. 18.(화)부터 11. 15.(금)까지	정당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 신고 (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) [시·도지사선거] 〈관할위원회에〉	중앙당 또는 시·도당의 대표자	사무소를 설치·변경하는 때 지체없이[설치운영은 선거일전 120일 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]	법§61의2①③ 정금법§34①④ 정금규§32②, §34①
8. 4.(일)부터 11. 15.(금)까지	정당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 신고 (회계책임자 선임 신고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포함) [구·시·군의 장] 〈관할위원회에〉		사무소를 설치·변경하는 때 지체없이[설치운영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]	
	정당·정책의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신청 〈중앙위원회에〉	중앙당	광고전까지(광고게재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)	법§137①③ 규§60②
6. 18.(화)부터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시·도지사, 교육감선거]	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선거일전 120일 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법§60의2① 교자법§49①
7. 5.(금)부터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구·시의 장의 선거]		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
8. 4.(일)부터	<b>예비후보자등록 신청</b> [군의 장의 선거]		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	
	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	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	법§60의2②
	전과기록 증명서류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			
	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(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)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			
	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 납부 〈선거구위원회에〉			
	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	선거구위원회	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	규§24②
	피선거권 조회 〈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, 등록기준지 관할 구·시·읍·면의 장에게〉	선거구위원회	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수리 후	법§60의2③ 규§26②
	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설치·변경 신고 〈선거구위원회에〉	예비후보자	지체없이	법§61①, §63① 규§28①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·선거사무원·활동보조인 선임·해임 및 교체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, 선거사무장	지체없이	법§62③④, §63① 규§28①
	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등 신고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명함을 배부하려는 때	법§60의3② 규§26의2①
	예비후보자의 인장의 인영신고 <관할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	규§21
	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선임·검임·변경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예비후보자 등록신청시	정금법§34①③, §35① 정금규§32②
	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개설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회계책임자 선임·신고한 때	정금법§34④ 정금규§34①
	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(수회에 걸쳐 발송하려는 경우 최초신고 시 일괄신고 가능)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발송일전 2일까지 (선거기간 개시일전 3일까지 발송)	법§60의3① 규§26의2⑤
	예비후보자공약집 2권 제출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예비후보자	발간 즉시	법§60의4①③ 교자법§49①
7. 18.(목)까지	<b>각급선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주민자치위원,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때 그 직의 사직</b> <해당 기관에>	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려는 사람	선거일전 9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까지	법§60②
7. 18.(목)부터 10. 16.(수)까지	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	누구든지	선거일전 9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	법§103⑤
	<b>의정활동 보고 금지</b> (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·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·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은 가능)	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	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	법§111①
7. 18.(목)부터 9. 15.(일)까지	당원집회 개최 신고 <개최지역 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>	정당	선거일전 90일부터 개최일전일까지 (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집회 개최금지)	법§141①② 규§63①
8. 17.(토)부터 10. 2.(수)까지	선거기간전 언론기관 초청 대담·토론회의 방송일시·진행방법 등 통보 <관할선거구위원회에>	언론기관	대담·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(개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)	법§82① 규§45④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8. 17.(토)부터 10. 16.(수)까지	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	지방자치단체의 장	선거일전 60일(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	법§86②
8. 17.(토)부터 10. 26.(토)까지	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·운영	각급위원회	선거일 전 60일[그 후 확정된 재·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확정된 때(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관리관은 확정된 후 5일)] 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	법§10의2② 규§2의3②
	중앙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원 추가 구성·운영	중앙위원회		법§10의3① 규§2의4①
	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·운영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146의2 규§67①
8. 17.(토)부터 11. 15.(금)까지	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 위원회 설치·운영	방송통신심의 위원회, 언론중재위원회	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	법§8의2, §8의3
8. 18.(일) 이전부터 10. 16.(수)까지	후보자 거주요건 <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> [지방선거에 한함]	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	법§16③
9. 13.(금)까지	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·주소 조사 통보 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기간개시일전 20일까지	법§65⑦
9. 14.(토)까지	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문 및 신고서 발송 <법 제38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전 10일까지	법§38③
9. 16.(월)까지	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<해당 기관에>	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선거일전 30일까지	법§53②④
	읍·면·동위원회의 대행할 직무의 범위·대행기간 등 결정·공고·통지 <읍·면·동위원회에>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30일까지	법§13③ 규§3③④
9. 21.(토)까지	예비후보자홍보물의 우편발송을 위한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 <구·시·군의 장에게>	예비후보자	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 5일까지	법§60의3③④
9. 21.(토)부터 9. 27.(금)까지	무소속후보자추천장 검인·교부 <교육감선거후보자, 무소속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> [검인·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]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시까지	법§48②④ 교자법§49①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9. 23.(월)까지	선거벽보, 선거공보·선거공약서 작성·제출수량 등 공고·통지 <정당·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>	선거구위원회	선거기간개시일전 10일까지	법§64③, §65⑫, §66⑧ 교자법§49①
	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·이용일시·시간대 등 통보 <선거구위원회에>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3일까지	법§71⑤ 규§36① 교자법§49①
	경력방송을 행할 지역방송국 지정·통보 <중앙위원회 등에>	한국방송공사	후보자 등의 연설을 위한 방송시설명·이용일시·시간 대등을 통보하는 때	법§73① 규§38①⑥
	투표구의 명칭과 구역의 일괄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전일까지	법§31③ 규§7
	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 <소속 군인·경찰공무원에게>	부대장, 경찰관서의 장	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 전일까지	법§65⑤
선거인명부(거소투표신고인명부 포함) 작성공무원 임면사항 통보 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임면한 때에 지체없이	법§39② 규§12①	
9. 24.(화)부터 9. 28.(토)까지	선거인명부 작성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 이내	법§37 규§10
	거소투표신고 <구·시·군의 장에게>	거소투표신고 대상자		법§38①, §201⑦ 규§11①②
	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	구·시·군의 장		법§38⑤⑥
	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게>	군인·경찰공무원		법§65⑤
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 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작성 후 지체없이	규§10⑥	
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및 거소 투표신고인명부 등본(전산자료복사본 포함) 송부 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신고인 명부를 작성한 때 즉시	법§37④, §38⑥	
9. 25.(수)까지	후보자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지정·공고·통지 <정당·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(통지는 후보자등록 시에)	법§71⑥ 교자법§49①
9. 26.(목)부터 9. 27.(금)까지	후보자등록 신청(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) <선거구위원회에>	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	법§49 규§20

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<p>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최근 5년간 후보자,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소득세·재산세·종합 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(외국학력의 경우 한글번역문 첨부)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에 관한 신고서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[교육감선거]</p> <p>비당원확인서 제출 [교육감선거]</p> <p>후보자 인장의 인영신고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 <p>기탁금 납부 〈선거구위원회에〉</p>	후보자가 되려는 사람	후보자등록신청시	<p>법§49④ 규§20</p> <p>교자법§49③</p> <p>교육감선거 관리규칙§2</p> <p>규§21</p> <p>법§49④, §56①</p>
	<p>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위한 방송시설과 일정 통지 〈후보자에게〉</p>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신청시	법§71⑥
	<p>기탁금 영수증 교부 및 금융기관 예치</p>	선거구위원회	기탁금을 현금으로 받은 즉시	규§24②
	<p>선거사무소, 선거연락소 설치·변경신고 〈관할위원회에〉</p>	후보자	지체없이	<p>법§61①, §63① 규§28①</p>
	<p>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 ·활동보조인의 선임·해임 및 교체신고 〈관할위원회에〉</p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	<p>법§63① 규§28①</p>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 인장의 인영신고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임·교체신고시	규§21
	회계책임자 선임·변경신고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연락소장	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, 선거연락소 설치신고를 하는 때(변경사유 발생후 지체없이)	정금법§34①③, §35① 정금규§32②
	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 계좌 개설신고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연락소장	회계책임자를 선임·신고한 때	정금법§34④ 정금규§34①
	피선거권 조회 <등록기준지 관할 구·시·읍·면의 장애계>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마감 후	법§49⑧ 규§20③
	전과기록 조회 <선거구 관할 검찰청의 장애계>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	법§49⑩ 규§20③
	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결정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마감후	법§150③④ ⑤⑥
	투표용지 인쇄원고 작성·송부 <구·시·군위원회에>	선거구위원회	투표용지 게재순위를 정한 후 지체없이	규§71①
	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· 소재지 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인쇄소를 결정한 때 지체없이	법§152②
	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선거구 공고· 보고<상급위원회에>·통지<하급위원회에>	선거구위원회	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 지체없이	법§191③
	후보자 사퇴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후보자	사퇴하고자 하는 때	법§54
	후보자의 당적이탈 등의 통보 <선거구위원회에>	정당	사유발생시 지체없이	규§22
	후보자등록·사퇴·사망·등록무효에 관한 공고·보고<상급위원회에>, 통지 <하급위원회에>·통보<한국방송공사에>	선거구위원회	지체없이	법§55 규§23의2①, §38⑦ 교자법§49①
	후보자등록무효 통지 <후보자, 추천정당에>	선거구위원회		법§52④
	정강·정책홍보물 2부 제출 (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) <중앙위원회에>	중앙당	배부전까지	법§138④
	정책공약집 2권 제출 (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) <관할위원회에>	정당 (판매할 당부)	발간 즉시	법§138조의2③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정당기관지 2부 제출 (전자파일로 대신 제출 가능) <중앙위원회에>	중앙당	발행 즉시	법§139③
	신문광고계재 인증서 교부신청 <시도위원회에> [시·도지사, 교육감선거]	후보자	광고전까지	법§69⑤ 교자법§49①
	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비용 등 통보 <선거구위원회에> [시·도지사, 교육감선거]	방송시설경영자	방송·방영일 전일까지	법§70③ 규§35① 교자법§49①
	선거공약서 배부 신고<선거구위원회에>, 제출<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>	후보자	· 신고 : 배부일 전일까지 · 제출 : 배부 전까지	법§66⑥ 교자법§49①
	현수막 표지 교부신청 <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	후보자	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때	법§67① 규§32② 교자법§49①
	후보자의 방송시설이용 방송연설 신고 <선거구위원회에>	후보자	방송일전 3일까지	법§71⑩ 규§36⑦ 교자법§49①
	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·방송일시·소요시간 등의 통보 <선거구위원회에>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방송일전 2일까지	법§72③
	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시설명·이용일시·시간대·후보자 1인의 방송연설시간 등의 통지 <후보자에게>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후보자의 연설을 방송하려는 때	법§72① 규§37①
	공개장소에서의 연설·대담용 자동차·확성장치, 녹음기·녹화기의 표지 교부 신청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자동차, 확성장치, 녹음기·녹화기를 사용하려는 때	법§79⑥⑩ 규§43②
	후보자등 초청 대담·토론회 개최신고 및 개최계획 제출 <선거구위원회 또는 개최지 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>	대담·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	개최일전 2일까지	법§81③ 규§44①④
	선거운동용 자동차·선박의 표지교부 신청 <관할위원회에>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운동용 자동차와 선박을 운행하려는 때	법§91④ 규§48②
	불법시설물 표시문 첩부	각급위원회	불법시설물 철거 등에 불응하는 때	법§271② 규§145①
	불법인쇄물 공고 <관할구·시·군위원회 게시판에>	각급위원회	불법인쇄물을 수거한 때	법§271② 규§145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불법선전물의 우송금지 또는 중지요청 〈해당 우체국장에게〉	각급위원회 (읍면동위원회 제외)	불법선전물을 우송하려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	법§272①
	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사실 통보(발송인) · 공고(발송인 주소 미기재시)	우체국장	우송을 중지한 때	법§272②
9. 26.(목)까지	선거인명부 열람장소, 기간,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 공고	구·시·군의 장	열람개시일전 3일까지	법§40③ 규§13③
	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등재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인터넷홈페이지 주소, 확인기간 및 방법 등 공고	구·시·군의 장		법§44②③
9. 27.(금)까지	경력방송원고 제출 〈선거구위원회에〉	후보자	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	법§73⑤ 규§38② 교자법§49①
9. 28.(토)까지	선거인명부(거소투표신고인명부) 사본 및 전산자료 복사본의 작성비용 공시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작성마감일까지	법§46⑤ 규§18④
	<b>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</b>	구·시·군의 장	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날에	법§44①
	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〈구·시·군위원회에〉	구·시·군의 장	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지체 없이	규§16①
9. 29.(일)	거소투표신고서,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및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〈구·시·군위원회에〉	구·시·군의 장	거소·투표신고인명부 확정 후 즉시	규§16①②
	거소투표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 시 그 사실 통보 〈구·시·군위원회에〉	구·시·군의 장	발견한 때마다 지체없이	규§14④
9. 29.(일)부터 10. 1.(화)까지	<b>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</b> 〈구·시·군의 장에게〉	선거권자는 누구든지	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	법§40①②, §41① 규§13
	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·통지 〈신청인, 관계인, 구·시·군위원회에〉	구·시·군의 장	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1②
	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〈구·시·군위원회에〉	이의신청인, 관계인	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2①
	불복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·통지 〈신청인, 관계인, 구·시·군의 장에게〉	구·시·군위원회	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2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9. 30.(월)까지	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	예비후보자	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	법§60의3①
	경력방송원고 송부 (한국방송공사(해당 지역방송국)에)	선거구위원회	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	법§73①⑤ 규§38②④ 교자법§49①
	후보자의 경력방송일정 통보 (선거구위원회, 시·도 또는 중앙위원회에)	한국방송공사 (지역방송국)	후보자의 경력방송 일정을 결정한 때	법§73① 규§38⑥
	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원고제공 (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에게)	선거구위원회	원고제공을 요청받은 때 지체없이	법§74① 규§39①
	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실시 통보 (선거구위원회에)	방송시설 경영·관리자	방송일전 2일까지	법§74②
10. 1.(화)까지	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·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신고인수 등 신고 (관할구·시·군위원회에)	기관·시설의 장	거소투표신고마감일후 3일까지	법§149①
10. 2.(수)까지	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·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 신고인수 등 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신고만료일의 다음날까지	법§149② 규§70②
	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 설치요청 (10명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·시설의 장에게)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공고일 후 2일 이내	법§149④
	기표소 설치요청서 사본 제출 (구·시·군위원회에)	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정당 등	기표소 설치를 요청한 때 지체없이	규§70③
	기관·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·운영일시 및 장소신고(관할 구·시·군위원회에)	기관·시설의 장	기표소설치일전 2일까지	법§149⑤
	기관·시설 안의 기표소 설치·운영일시 및 장소 공고	관할 구·시·군위원회	기표소 설치일 전일까지	법§149⑤ 규§70④
10. 2.(수)까지	<b>선거벽보 제출</b> (구·시·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)	후보자	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	법§64② 규§29④
10. 2.(수)부터 10. 3.(목)까지	<b>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</b> (구·시·군위원회에)	해당 선거권자, 구·시·군의 장	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	법§43①
10. 3.(목)부터 10. 4.(금)까지	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·통지 (구·시·군의 장, 신청인에게)	구·시·군위원회	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	법§43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10. 3.(목)까지	선거인명부 또는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신청 및 그 비용 납부 (구·시·군의 장에게)	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기간개시일까지	법§46②③⑤ 규§18③
10. 3.(목)부터	<b>선거기간 개시일</b>	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	법§33③
10. 3.(목)부터 10. 15.(화)까지	<b>선거운동기간</b>		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	법§59
10. 3.(목)까지	대담·토론회 개최일시·장소 등 통지 [해당 위원회, 중계방송사, 해당 후보자에게]	선거방송토론 위원회	선거기간개시일까지	토론규§23①
10. 3.(목)부터 10. 15.(화)까지	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·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	선거방송토론 위원회	선거운동기간중	법§82의2②③ 교자법§49①
10. 3.(목)부터 10. 16.(수)까지	후보자의 전과기록 열람 (선거구위원회에)	누구든지	선거기간중	법§49① 규§20⑤
10. 4.(금)까지	<b>선거공보 제출</b> (구·시·군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)	후보자	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	법§65⑥ 규§30⑤
	<b>선거벽보 첩부</b>	구·시·군위원회	제출마감일후 2일 (섬 및 산간오지는 3일)까지	법§64② 규§29②⑤
	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(책자형선거 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) 이의 제기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(해당 상급위원회에)	제출요구받은 이의제기자, 후보자	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	법§64⑥, §65⑫ 규§29⑦, §30⑫
	선거벽보등의 내용 중 경력등(책자형선거 공보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) 허위사실 게재 및 사생활비방에 대한 고발 사실 공고 및 공고문사본 투표구와 (사전)투표소 입구에 첩부	상급위원회, 선거구위원회	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의 판명 또는 사생활 비방에 대한 고발시	법§64⑥⑦⑪, §65⑫ 규§29⑧, §30⑫
	대담·토론회 참석확인서 또는 불참 사유서 제출 ※ 합동토론회 개최동의서 제출	통지를 받은 후보자	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날까지	토론규§23②
	토론회 등의 개최 공표·통지 (후보자, 선관위에)	선거방송토론 위원회	토론회 개최일 전일까지	토론규§28
10. 4.(금)	<b>선거인명부 확정</b>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일전 12일에	법§44①
	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및 선거인명부 전산자료 복사본 송부 (구·시·군위원회에)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확정 후 지체없이	규§16①
	선거인명부 수정상황 통보 (구·시·군위원회에)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 시	규§14③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통합선거인명부 작성	중앙위원회	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제출받았을 때	법§44의2①③ 규§16의2①
10. 5.(토)부터 10. 16.(수)까지	선거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<구·시·군위원회, 읍·면·동위원회에> ※ 사전투표기간 종료 전에는 구·시·군 위원회에 ※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에는 구·시·군 위원회와 읍·면·동위원회에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 확정 후 발견시마다	규§16의2⑤
	구·시·군의 인터넷홈페이지로 확정된 선거인명부, 등재여부, 등재번호 및 투표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	구·시·군의 장	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	법§44②
10. 6.(일)까지	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	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일전 10일까지	법§147⑧
	무투표 통지 <거소투표신고인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191③ 규§109①
	거소투표용지 발송 (선거공보, 거소투표안내문 동봉) <거소투표신고인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65⑥, §154①⑤ 규§77
	군인 등 신청자에게 선거공보 발송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65⑥
	투표안내문(접자형 포함) 발송(선거공보 동봉) <매세대에>	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	법§65⑥, §153① 규§76
우편투표함 비치	구·시·군위원회	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	규§80①	
	허위신고자등에 대한 거소투표용지 미발송 사유 및 (사전)투표소 투표의 뜻 통지 <해당 선거인에게>	구·시·군위원회	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없이	법§154② 규§78③
10. 7.(월)까지	사전투표소의 명칭·소재지 및 설치·운영기간 공고·통지(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에게) 및 투표구마다 공고문 첨부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9일까지	법§148② 규§68⑤
10. 9.(수)까지	사전투표소의 참관인 선정·신고 <읍·면·동위원회에>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일전 7일까지	법§162② 규§3③, §88①
	투표용지 모형공고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152① 규§75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10. 10.(목)까지	<b>사전투표소 설비</b> (읍·면·동마다)	사전투표관리관	선거일전 6일까지	규§68④
	사전투표참관인 선정(사전투표참관인이 없거나,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)	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일전 6일까지	법§162③ 규§3③, §88①
	사전투표참관인 교체신고 (읍·면·동위원회에, 사전투표기간 사전투표소에서)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신고 후 언제든지	법§162② 규§88①
10. 11.(금)부터 10. 12.(토)까지	<b>사전투표</b> [매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]	사전투표관리관	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	법§148①, §155②, §158
	관할우체국장에게 회송용봉투 인계 및 관내사전투표함 구·시·군위원회 인계	사전투표관리관	매일의 사전투표 마감 후 또는 사전투표기간 종료 후	법§158⑥
10. 11.(금)까지	<b>개표소 공고</b> [2개소 이상 설치시 개표소별 개표할 선거명 공고·통지(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에게)]	구·시·군위원회	선거일전 5일까지	법§173①② 규§95②
	점자형선거공약서 우편발송을 위한 시각장애인과 그 세대주의 성명·주소의 교부신청(구·시·군의 장에게)	후보자		규칙§31④
10. 14.(월)까지	<b>투표참관인 선정·신고</b> (읍·면·동위원회에)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선거일전 2일까지	법§161② 규§88①②
	<b>개표참관인 선정·신고</b> (구·시·군위원회에)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	법§181② 규§102①
	사전투표소 투표자가 반영된 선거인명부 출력	읍·면·동위원회	사전투표기간만료일 후 2일까지	법§44의2④
10. 15.(화)까지	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일전 2일까지 거소투표용지가 반송된 거소투표신고인의 명단 작성·통지 (읍·면·동위원회에 → 투표관리관에게)	구·시·군위원회 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일 전일까지	법§154③ 규§78③
	<b>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</b> (읍·면·동위원회에) <b>투표용지, 투표함, 선거인명부 인계</b> (투표관리관에게)	구·시·군위원회 읍·면·동위원회		법§151① 규§16의2③④
	<b>투표소의 설비</b>	읍·면·동위원회 투표관리관		법§147① 규§67의2

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투표참관인 선정(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·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만시)	읍·면·동위원회	선거일 전일까지	법§161③ 규§88①
	개표소의 설비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173③ 규§95①
	개표참관인 선정(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)	구·시·군위원회		법§181③ 규§102
	투표참관인 교체신고 (읍·면·동위원회에, 선거일 투표소에서)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신고 후 언제든지	법§161⑤ 규§88①
	개표참관인 교체신고 (구·시·군위원회에, 개표일 개표소에서)	정당·후보자,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		법§181② 규§102④
	정당추천위원의 투표용지 수령·보관·인계 시 입회	정당추천위원	투표용지수령·보관 및 인계 시	법§151⑤
선거일 10. 16.(수)	투표 (투표진행, 투표록작성 등)	투표관리관	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	법 제10장
	거소투표 및 사전투표 접수	구·시·군위원회	오후 8시까지	법§155⑤
	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개표소 이송	구·시·군위원회	오후 8시 후에	법§176③
	투표함 등 송부 (구·시·군위원회 개표소에)	투표관리관	투표가 끝난후 지체없이	법§170 규§94
	개표 (개표진행, 개표결과공표, 마감상황 보고, 개표록 작성 등)	구·시·군위원회	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	법 제11장
	개표록 송부 (선거구위원회에)	구·시·군위원회	개표록 작성후	법§185① 규§106
	후보자별 득표수계산·공표 및 선거록 작성, 당선인 결정상황 보고 (상급위원회에)	선거구위원회	개표록을 송부받은 때	법§185②, §188⑥, §190③, §191③
	당선인결정·공고·통지, 당선증 교부	선거구위원회	지체없이	법§188, §190,§191 규§108
10. 16.(수)까지	선거사무장등이 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종전의 직 복직금지	선거사무관계자 등	선거일까지	법§60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10. 26.(토)까지	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및 공고·통지 <해당 당선인, 소속정당에>	선거구위원회	선거일후 10일 이내	법§193① 규§111
10. 28.(월)까지	<b>선거비용 보전청구 및 부담비용 청구</b> <선거구위원회에>	후보자	선거일후 10일까지 (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)	법§122의2① 민법§161 규§51의3①
10. 30.(수)까지	선거효력에 관한 소청 <시·도위원회, 중앙위원회에>	선거인, 후보자추천정당, 후보자	선거일부터 14일 이내	법§219①
	당선효력에 관한 소청 <시·도위원회, 중앙위원회에>	후보자추천정당, 후보자	당선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	법§219②
	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·공고 및 결정서 송달 <소청인, 피소청인, 참가인에게>	중앙위원회, 시·도위원회	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	법§220①③
	선거소송, 당선소송 제기 <고등법원, 대법원에>	소청인,당선인, 피소청인	·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· 소청결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(소청결정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)	법§222② §223②
10. 31.(목)까지	기탁금 부족액 납부고지 <해당 기탁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선거일 후 15일까지	규§25④
	기탁금 부족액의 납부 <선거구위원회에>	해당 기탁자	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	법§57②
	기탁금 부족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 요구	선거구위원회	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	법§57③ 규§25④
	당선인의 재산신고서 사본 송부 <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>	선거구위원회	당선인 결정 후 15일 이내(요청이 있는 경우)	법§49⑨
11. 5.(화)까지	<b>정치자금에 대한 회계마감</b>	회계책임자	선거일 후 20일까지	정금법§40①
	<b>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</b> <기탁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	법§57① 규§25①
11. 15.(금)까지	귀속기탁금의 정산내역 통지<기탁자에게>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(중앙위원회)의 수입징수관에게 납입	선거구위원회	선거일 후 30일 이내	법§57② 규§25②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 〈병무청장(원본), 소속기관의 장(사본)에게〉	선거구위원회	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	공병법§9④ 공병령§16
11. 15.(금)까지	<b>정치자금 회계보고</b> 〈해당 위원회에〉	회계책임자	선거일 후 30일까지	정금법§40① 정금규§40①
	선거비용 추가보전 청구 〈선거구위원회에〉	후보자	정치자금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	규§51의3①
11. 22.(금)까지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 사본의 열람기간 · 장소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공고	관할위원회	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	정금법§42① 정금규§41①
	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, 보고, 자료제출요구 등 〈정당·후보자·예비후보자·회계책임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게〉	각급위원회 (읍·면·동 위원회 제외) 위원·직원	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	정금법§43① 정금규§43①
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인터넷 (선거비용에 한함) 공개 〈누구에게나〉	관할위원회	공고일부터 6개월간	정금법§42②
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등의 사본 교부신청 및 교부에 필요한 경비납부 〈해당 위원회에〉	사본교부신청인	공고일부터 언제든지 ※ 사본교부신청시 수입인지 첨부	정금법§42② 정금규§41③
	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 〈관할위원회에〉	이익있는 자	열람기간 중	정금법§42⑥ 정금규§42①
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제출 통지 〈회계책임자, 관계인에게〉	관할위원회	이의신청을 받은 때	정금법§42⑧ 정금규§42③
	정치자금회계보고서 내용의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〈관할 위원회에〉	회계책임자, 관계인	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	정금법§42⑧ 정금규§42③
	정치자금회계보고서의 이의신청 내용과 소명내용 등 공고·통지 〈이의신청인에게〉	관할위원회	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와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 지체없이	정금법§42⑧
12. 15.(일)이내	<b>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지급</b> 〈해당 후보자에게〉	선거구위원회	선거일 후 60일 이내	법§122의2① 규§51의3②
	후보자의 반환·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 〈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 정당에, 무소속 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〉	후보자	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	정금법§58①

시행일정	실시사항	실시기관(자)	기준일	관계법조
	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사실통지 및 보전비용 반환 명령 <해당 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선거비용을 보전한 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	법§135의2⑤ 규§59의2
	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등에 대한 보전비용 반환 <선거구위원회에>	후보자	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	법§135의2⑤
	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 위탁	선거구위원회	반환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	법§135의2⑥
	보전유예비용의 납입 <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>	선거구위원회	유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	법§135의2④ 규§59의2③
	보전을 유예한 선거비용의 지급 <해당 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무죄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가 있는 때부터 20일 이내	규§59의2③
	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(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)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반환고지 <해당 후보자에게>	선거구위원회	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	법§265의2②
	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(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)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납부 <관할 선거구위원회에>	해당 후보자	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	
	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(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비당선인 포함)의 기탁금 및 보전비용 징수위탁 <해당 후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>	선거구위원회	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	법§265의2③
25. 4. 16.(수)까지	선거사무장등이 된 각급선관위 위원,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, 통·리·반의 장이 종전의 직 복직금지	선거사무 관계자등	선거일 후 6월 이내	법§60②